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4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식회사 라이노스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 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 ③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④ "기준지표 등"이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 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문 계약 및 자문대상자산의 특성, 투자자문 자산의 규모, 서비스 제공수준 등 투자자문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의 2 (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제 4 조의 3 (성과수수료의 산정 및 수령 기준)

① 회사는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 2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회사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문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2. 성과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3.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전체에 관한 사항
5. 기준지표 등
6. 성과수수료의 지급시기
7. 성과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 4 조의 4 (성과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의 설정)

제 4 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지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제 5 조 (계약의 중도해지, 증액 및 감액 등)

투자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중도해지,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변경 및 반환절차 등의 회사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 ① 투자자문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계약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 ③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계약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 ⑤ 계약의 감액 또는 중도해지 시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시 등)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 월 1 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투자자문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

회사의 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방식,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신규 계약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구 분	기본 수수료	성과수수료
수수료율	1.5%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도 : 성과수수료율은 20% 이하)
산정방식	자문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자문계약금액 x (계약자산수익률 - 기준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지급시기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비고	-	자문계약에 성과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성과수수료는 본 기준 제 4 조의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계약기간 중 자문계약금액 증액 시 수수료 산정

구 분	증액 시 기본수수료	증액 시 성과수수료
수수료율	최초 기본수수료를 기본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최초 기본수수료를 기본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도 : 성과수수료율은 20% 이하)
산정방식	증액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증액일부터 계약만기일까지 잔존일수 (*) / 365	{최초자문계약금액 x (계약경과기간 누적 수익률 - 기준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 {증액금액 x (증액이후 누적수익률 - 잔 존기간 기준수익률) x 성과수수료율}
지급시기	증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계약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비고	-	자문계약에 성과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잔존일수 산정 시 증액시점 및 계약만기일 양일 산입

주) 성과수수료는 본 기준 제 4 조의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계약기간 중 자문계약금액 감액 또는 중도해지 시 수수료 산정

구분	감액/중도해지 시 기본수수료	감액/중도해지 시 성과수수료
수수료율	감액 이후 기간의 수수료율은 최초계약 시 기본수수료를 기준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감액 이후 기간의 수수료율은 최초계약시 성과수수료를 기본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도 : 성과수수료율은 20% 이하)
감액/중도해지 수수료 산정방식	기본수수료 반환금액 = 감액금액 x 최초 계약시 기본수수료율 x (감액일부터 계약만기일까지 잔존일수 ^(*)) / 365	감액금액 x (계약경과기간 누적수익률 - 계약기간기준수익률 ^(**)) x 성과수수료율
지급시기	반환시기 : 감액/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시기 : 감액/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비고	-	자문계약에 성과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경과일수 산정 시 최초계약 및 계약만기일 양일 산입

(**) 계약기간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 x 계약경과일수 / 365

주) 성과수수료는 본 기준 제 4 조의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손실발생 후 재계약 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산정 방법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연장(재계약)하는 경우 아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성과수수료 책정을 위한 기준금액(이하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투자자문재산 평가금액 전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직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과 재계약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이 동일

예) 전년도 계약금액 5억원, 전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6억원, 현재 평가금액 4억원일 때 그대로 재계약할 경우
- 금년도 재계약금액 = 4억, 금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 6억

나. 투자자문재산 일부를 출금(감액)한 후 재계약하는 경우

- 1) 재계약금액(A) = 현재 평가금액 - 투자자문재산 출금금액
- 2) 조정후 자문손실금액(B) = (A) / 현재 평가금액 x 자문손실금액
- 3)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 (A) + (B)

예)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5억 원, 현재 평가금액 4.5억 원일 때 9천만 원 감액하여 재계약할 경우
- 재계약금액 = 4.5억-0.9억 = 3.6억
- 조정후 운용손실금액 = 3.6억/4.5억*(5억-4.5억) = 0.4억
-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 3.6억+0.4억 = 4억

